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손정자 의워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8

발의연월일: 2024. 1. 16.

발 의 자 : 손정자, 김영실, 이상기,

한송연, 박윤옥, 이진환,

김상수, 이경숙, 박경원

1. 제안 이유

남양주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간 업무 연계 체계 구축으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남양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제명 개정

- (기존)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- →(변경)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
- 나. 위원회 변경
 - 자문위원회 → 운영위원회
- 다. 목적의 재규정 (안 제1조)
- 라. 정의, 시장의 책무, 시행계획 수립·시행 신설 (안 제2조~제4조)
- 마.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·운영 규정 (안 제5조~제12조)
- 바.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 (안 제13조~제16조)
- 사. 시행규칙 규정 (안 제17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

- 가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, 제4조, 제15조
- 나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조

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, 정신질환자의 재활·복지·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남양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남양주시 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,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,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매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「지역보건법」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 공과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 른 보건소에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 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제6조(업무) ①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
 - 2. 정신질환의 예방, 상담, 조기발견,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사업
 - 3. 정신건강에 관한 지역사회 조사 및 진단
 - 4.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

- 5.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,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·홍보
- 6.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
- 7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
- 8.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
- 9. 정신질환자 응급상황, 감염병, 재난 등 지역사회 위기관리 사업 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, 사회복지시설,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,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- 제8조(위탁시설의 운영) ① 센터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정신건강증진사업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 -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. 다

- 만, 프로그램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, 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.
- 제9조(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) ①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.
 - ②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 규정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계약의 해지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·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
 - 2. 수탁자가 계약 및 관련 법규, 조례,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 나 이를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우
 - 3.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도·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위·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
 - 4. 수탁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·수탁 계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
 - 5. 그 밖에 수탁자가 중대한 귀책 사유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

때

-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센터 운영비 사용잔액 및 시설·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.
- 제11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에 관한 장부 등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제12조(보고) 수탁자는 수탁 사업의 운영과 그 예·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하다.

- 제13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
 - 2. 기관별 연계 방안 및 협조 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
 - 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4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양주보건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, 정신건강사업 담당 공무원,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.
 - 1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
 - 2. 수탁기관 관계자
 - 3.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
 - 4. 그 밖에 정신건강 및 기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

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.
- 제1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
 - ②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 - 2.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

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남양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위·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위·수탁 계약 으로 본다.
 -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.
 -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양주시 정신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원의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임 관계법령 발췌서

☑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정신질환자"란 망상, 환각, 사고(思考)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정신건강증진사업"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·상담,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, 정신질환자의 재활,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·교육·주거·근로 환 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.
- 3. "정신건강복지센터"란 정신건강증진시설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(이하 "사회복지시설"이라 한다),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(이하 "정신건강증진사업등"이라 한다)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- 가.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·운영하는 기관
 - 나.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 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
- 4. "정신건강증진시설"이란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.
- 5. "정신의료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의료법」에 따른 정신병원
 - 나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된 의원
 - 다. 「의료법」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 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
- 6. "정신요양시설"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
- 7. "정신재활시설"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"정신질환자등"이 라 한다)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, 정신질환을 예방·치료하며,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·조사와 지도·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, 사회복지시설,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,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 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 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

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"보건소"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
-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(이하 "보호의무자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- ① 시·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내용을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⑧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☑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- 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정신건강증진시설
 - 2.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 - 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 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, 사업집행현황,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